

부산지방법원 2022. 1. 13 선고 2021가단108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가 2018. 10. 23. C와 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. 6. 접수 제4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금덕희

별지